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6. 27 선고 2022가단658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양지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, 양영훈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4. 5. 23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 C와 망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4. 체결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C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 중 3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는 위 근저당권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9. 10. 4. 접수 제392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, D, E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(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)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과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피보전채권,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망 F와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그 수익자인 망 F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C는 진정한 채권자인 망 F의 요구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, 망 F의 채권이 진정한 채권이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 C와 망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4. 체결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 F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9. 10. 4. 접수 제392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망 F가 2021. 4. 18.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B, 자녀들인 피고 C, D, E가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, C, D, E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희영

별지